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7. 8. 10.(목) 14:15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효성 위 원 장
허 욱 부위원장
김석진 상임위원
표철수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1 성원보고

2 국기에 대한 경례

3 개회선언

4 지난 회의록 확인

o 제2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5 회의공개 여부 결정

o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6 보고사항

가.「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」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

o 2017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해 「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」(고시) 일부 개정안에 대해 최성호 기획조정관의 보고를 받고,

-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는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별로 징수율을 나누고 개별 방송사의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징수율을 적용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하되, 지역·중소 방송사 중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감소로 징수율 구간이 변경되었거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12개사는 징수율을 감경하고 흑자로 전환된 1개사는 징수율 감경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징수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접수하고,

< 2017년 지상파 최종징수율 조정 사업자 >

방송사업자		현 행	개정안
매출감소 (징수구간 변경)	춘천MBC, 포항MBC, 제주MBC	2.30%	1.30%
당기순손실 발생 (징수율 1/2 감경)	강원영동MBC, OBS,	2.30%	1.15%
	충주MBC, 전주방송, 울산방송	1.30%	0.65%
	원음방송, 부산영어, 한국DMB	0.30%	0.15%
매출감소 + 당기순손실 발생	안동MBC	2.30%	0.65%
당기순이익 발생 (징수율 감경 제외)	YTN DMB	0.15%	0.30%

- 종편·보도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종편·보도PP의 총 매출액이 증가하였고, JTBC를 제외하고는 5개사 모두 당기순손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상황이 개선되어 최종징수율을 상향하여 조정하되, 종편·보도PP의 자본결손이 여전하고 방송광고 매출액 증가폭이 감소 추세인 점, 그리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최종징수율을 종전 0.5%에서 1.0%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접수함

< 2017년 종편・보도PP 최종징수율 >

구 분	부과기준	현행	개정안
종합편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	방송광고 매출액	0.5%	1.0%
보도전문방송 채널사용사업자	방송광고 매출액	0.5%	1.0%

나.「방송사-외주제작사간 외주제작 실태조사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」

o 독립PD 사망 사건 등으로 부각된 방송사-외주사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「방송사-외주제작사간 외주제작 실태조사 추진 계획」에 관한 사항을 김동철 방송기반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
- 실태조사 관련 추진체계, 추진방안, 일정 등을 포함한 '방송사-외주제작사간 외주제작 실태조사 추진계획'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함

7 의결사항

가.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계획에 관한 건 (2017-23-135)

o EBS 사장의 의원면직('17.8.7.)에 따라,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의거하여 EBS 사장을 보궐임명하기 위한「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계획에 관한 건」에 대해 최성호 기획조정관으로부터 보고 받고,

- 선임방안 및 추진 일정 중 후보자 모집 공모기간을 당초 8.11(금)~21(월)에서 8.11(금)~25(금)로 늘리는 것을 조건으로「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계획에 관한 건」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나.「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·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」제정(안)에 관한 건 (2017-23-136)

o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〔별표 4〕제5호 사목 4)에서 위임한 「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·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」제정안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
- 전체회의에 기 보고한 고시 제정안 중 공정위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용자 이익의 현저한 침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문구를 반영하여 수정한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, 사업자들이 고시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, 부당성 명확성 제고를 위해 고시 해설서를 발간하기로 함

다.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(2017-23-137)

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
- ㈜디지파츠, ㈜삼미정보시스템,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, ㈜씨앤피에스, ㈜아트엘비에스, ㈜웅진플레이도시, ㈜프라이머리넷 7개 법인에 대해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, 위치정보보호법 관련법령 준수 등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하기로 하고,

- 위치정보시스템 운영계획 미흡, 기술적 보호조치 등이 미흡하여 심사사항별 점수 및 총점 미달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㈜씽크브릿지, ㈜아데나, ㈜콘텔라 3개 법인에 대해 허가를 거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라. 2016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(2017-23-138)

o 방송법 제69조의2(시청점유율 제한) 및「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」고시에 따라 2016년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를 김동철 방송기반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,

- 방송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시청점유율 30%를 초과한 방송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'2016년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'를 원안대로 의결함

마. 2016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 (2017-23-139)

o 2016년도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사업자 중 이행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2016년도 실적 공표 여부를 김동철 방송기반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,

-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함

< 의결 내용 >

▷ 제공의무 미달성 방송사업자(원주MBC, MBC강원영동, 춘천MBC, 채널A, 연합뉴스TV, CJ E&M)에 대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, '18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시 정부 제작지원금 축소

▷ 2016년도 편성실적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, 방통위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대외에 공표

⑧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o 차기 회의는 8월 24일(목)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6:00)